

- 2026년 7월 중 -

불법어업 지도·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추진목표

- ◇ '선(先) 지도, 후(後) 단속'을 통한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, 투명·공정한 행정 구현

1 육·해상 지도점검 계획

□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 EEZ 침범조업 예방 관리강화

- (침범조업) 외국 EEZ*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(부설형 어업 및 저인망 등)에 대한 지도·홍보를 강화하고, EEZ 침범조업 집중 모니터링
 - 특히, 7월부터 남해안 한·일 EEZ경계선(100, 106해구) 인근 눈볼대 조업시* 서남구저인망·연근해자망 등 日EEZ 침범조업 강력단속
 - 항적자료, 침범거리, 반복횟수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 지정, 고의적인 침범조업 정황 발견시 강력 지도·단속 실시
- * (주의사항) ①GPS 위치오차 고려하여 EEZ경계선과 안전거리 유지필수(조업 준비 과정도 어업의 일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음), ②측지계(동경-세계) 혼용사용 금지
- (횡단어선) 한·일 중간수역에서 연료절감 등을 위해 EEZ 횡단 증가, 횡단 시 어구격납 철저, 지도선과 통신채널 구축 등으로 피랍방지

□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지도·단속

- 암컷, 체장미달 대게 포획·유통·판매, 암컷대게 통발미끼 사용 및 '대게·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(주11해역)' 위반 등

< 중점 단속대상 >

- ▶ 암컷 및 체장미달, 금어기 등 불법 대게 포획·유통·판매 행위
 - * [금지체장/금어기] 대게(9cm이하/6.1~11.30), 붉은대게(-/통발 7.10~8.25)
- ▶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, 대게류·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
 - * 경북(경주~울진)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(연중, 주11해역)
- ▶ 그물코 금지 규격(통발 150mm 이하, 자망 240mm 이하) 위반
- ▶ 대게 TAC 초과어획, 어획량 미보고·거짓보고, 지정 판매장 위반(사매매) 등

□ 조업구역 이탈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집중단속

- (107도선) 경상북도-울산광역시 경계 107도 연장선 침범조업* 관련 기선권현망, 서남구·동해구저인망, 동해구트롤 지도점검

* 107도선 기준 기선권현망·서남구저인망 북상조업 금지, 동해구저인망 남하조업 금지

< 107도선 관련 경북-울산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 좌표 >

측지계	도-분 표기	도-분-초 표기
WGS84	35-39.070N, 129-27.067E	35-39-04.22N, 129-27-04.06E

- (128도 이동조업) 악천후 시 대형기선저인망,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기준 동쪽 해역 조업 여부 및 허위 위치보고 등 지도·점검

* 부산·경남 출항하여 남해연안 인근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후 불법조업 집중관리

- (조업금지) 동해구트롤의 경북연안 근접조업, 서남해구중형저인망 (외·쌍끌이) 경남 홍도~남여도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여부 지도·점검

* 현측식 동해구트롤의 선미경사로 등 유사시설(탈부착식 핸드레일) 설치여부 병행점검

- (불빛금지) 야간 시간대, 선망(대형·소형·연안) 어업의 연중 불빛이용 금지구역* 내 불빛을 이용한 불법조업 여부 집중 점검

* 「수산업법」 시행령 별표 7의 주2)의 해역 및 추자도와 거문도 주위 7,400미터 이내의 해역

□ 어선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지도·점검

- (D-MF/HF) 고의로 미작동하거나,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 모드로 작동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

* (설치대상) 기선권현망·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

** (미설치)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/ (미작동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(위치소실) 대형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절기(11~익년 3월)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치신호 연속소실* 어선에 대한 조기대응 실시

* 2개 종류 이상의 어선 위치발신장치 신호가 10분 이내 간격으로 수신되지 않을 경우

** (운영) 위치소실 알람 발생시 대응시간 축소(60분→30분), 안전확인 불가 시 구조기관 즉시 통보

- (고장신고)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,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「어선법」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

* 고장·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

□ 참다랑어 불법 포획·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·점검

- (점검사항) 강원·경북 참다랑어 쿼터 전량 소진(또는 임박)에 따른 포획 금지명령에 따라 정치망 등 주 포획 업종에 대한 점검 강화
 - 「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쿼터량 준수 여부 및 육·해상 유통 경로 추적·감시를 통한 불법 전재·양륙 점검
- * (강원) 정치망 및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포획 정지 및 위탁 판매금지 조치(6.11~현재)

□ 어구관리제도 이행실태 상시 점검

- (점검내용) 어구 생산·판매업 신고제, 어구·부표 보증금제 이행,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, 신규 어구관리제도* 이행 여부 등
- * 어구관리기록부, 유실어구신고제,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현장 홍보

대상	주요 점검 내용
어선	▶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▶ 어구관리기록부 비치·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여부 ▶ 어구·부표보증금제 대상 어구 사용여부
어구 생산·판매업체	▶ 생산·판매 신고제 이행 여부(신고증, 기록관리) ▶ 어구보증금제 이행 대상(통발, 자방, 양식장 부표, 장어통발) 생산·판매·수입 업체 (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 어구 생산·수입 점검)
양식장	▶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 및 사용 여부 ▶ 폐부표의 적법 처리, 어구·부표 보증금 간접 표식 구매

2 수산관계법령 주요 제·개정 및 제도 안내

□ 구명조끼 상시착용

- (주요내용)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* 추진
- * (기존) 특보 시 노출갑판, 특보 무관 2인 이하 → (변경) 모든 어선원 상시착용(26.7.1.)
- ※ 위반시 과태료 (1차) 90만원 → (2차) 150만원 → (3차) 300만원

□ 어선 건조·개조업 등록제 실시

- (주요내용) 어선을 건조·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 등록하도록 하여 안전한 어선 건·개조 유도 및 불법 증·개축 차단
 - 어선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*가 선주와 건·개조업자까지 확대되고 위반시 영업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분**규정이 신설
- * (기준) 어선소유자 → (‘25.12.21~) 어선소유자+건조·개조업자(「어선법」 제9~10조 신설)
- ** 등록기준 미달, 변경등록 미이행, 어선 불법 개조 →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등록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→ 등록취소

□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자적 고장·분실 신고방법 도입

- (주요내용)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·분실 발생 시 파출소 등 현장방문을 통한 신고에서 모바일·인터넷을 통한 신고 서비스 확대 시행(‘25.09.15~)
 - * 「선박패스(V-pass)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11조~제13조
-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(<http://coss.kcg.go.kr> 또는 앱) 접속, 어선위치 발신장치 고장 신고 탭 이용, 고장·분실·수리연기 신고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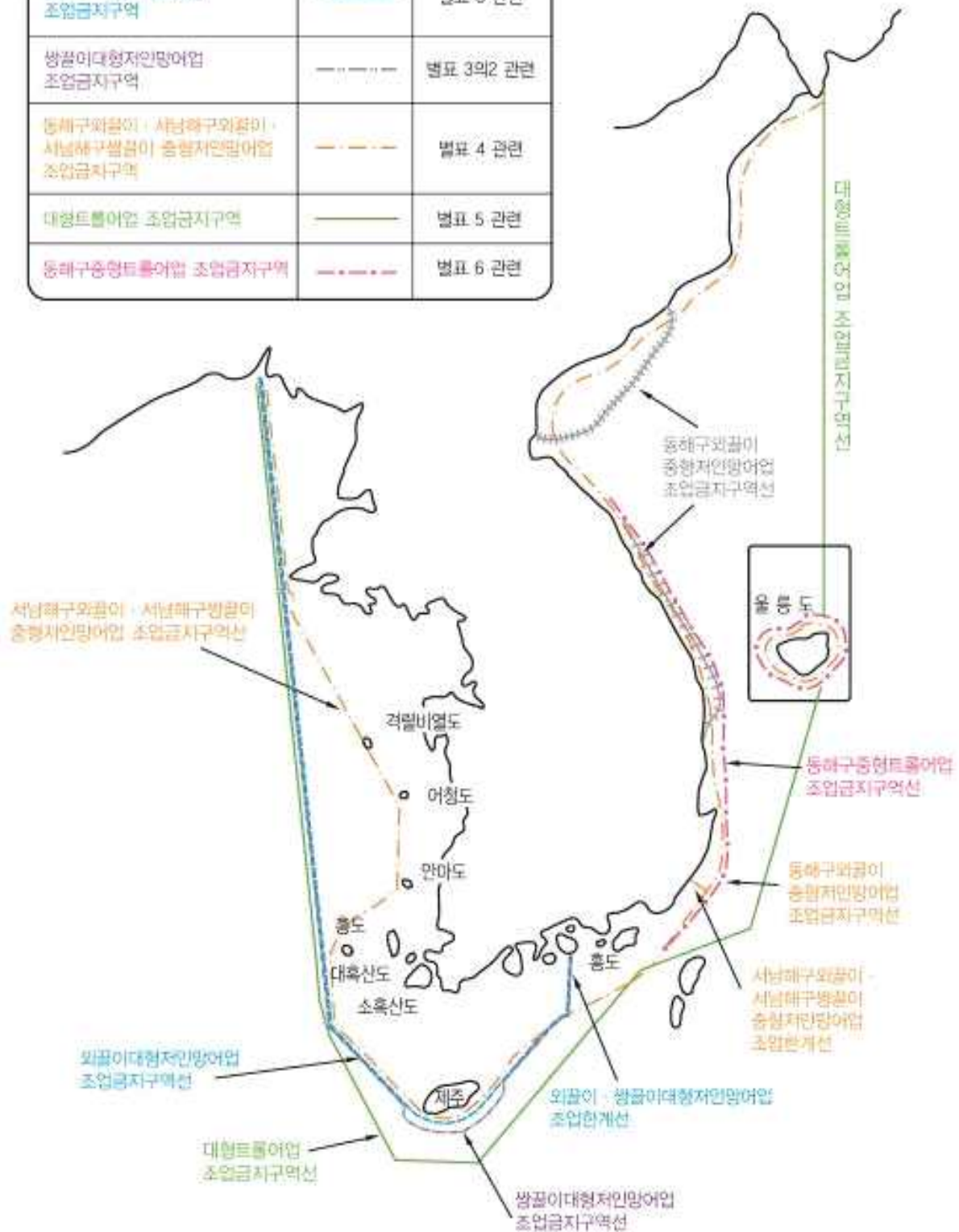
□ 어선 위치통지 제도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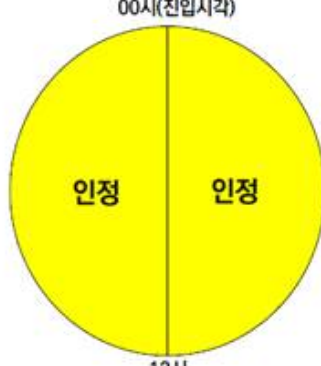
- (주요내용)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시행령 개정에 따라, 특정·조업자제 해역을 포함한 전 해역 내 풍랑·태풍특보 시, 위치통지 개선
 - * (일반해역) 매 24시간 이내 / (특정·조업자제해역) 매 12시간 이내 / (풍랑특보) 해역 구분 없이 매 12시간 이내 / (태풍특보) 해역구분 없이 매 4시간 이내

□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제도

- (신고대상)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, 금어기·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위반,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자
 - * (신고방법) 1588-5119(전화), 인터넷(동해단 홈페이지), 모바일(카톡 채널, 국민신문고 등)
- (포상금액) 「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」에 따라 심사 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

어업별	범례	비고
외곽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	-----	별표 3 관련
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	-----	별표 3의2 관련
동해구외끌이·서남해구외끌이·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	-----	별표 4 관련
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	-----	별표 5 관련
동해구중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	-----	별표 6 관련



구 분		현 행		개 정	
평시	일반 해역	1회	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 통지 	1회	최초 통지는 출항시각 기준 24시간 이내,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* 2회차 통지는 1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, 3회차 통지는 2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, 이후 동일한 방법 
	특정 해역	3회	매일 출항시각 기준 6시간 후 통지, 2·3번째는 이전통지와 6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	2회	최초 통지는 특정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,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
	조업 자제 해역	2회	매일 출항시각 기준 8시간 후 통지, 2번째는 이전통지와 8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	2회	최초 통지는 조업자제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,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
기상 특보 시	풍랑 특보	평시+2회 *ex) 일반해역 3회(1+2)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마다 통지 (전후 30분 이내만 인정) 	전해역 2회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 이내 (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) 
	태풍 특보	평시+6회 *ex) 특정해역 9회(3+6)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마다 통지 (전후 30분 이내만 인정)	전해역 6회	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 이내 (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)

점검대상	점검내용	제재사항
관리기관	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20
어업인	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,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·양도 또는 사망·이어(離漁)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,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	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(자동차, 가정용 보일러,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)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※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,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	
	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◆ 그 외,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◆ - 어업 등에 대한 제한(취소, 감척 등)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→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- 「수산업법」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→ 과징금(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)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	
석유 판매업자	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·공제세액을 초과 신청	감면세액 추징
	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·공제세액 신청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※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,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(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)	

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

7월 1일부터
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
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



팽창식
구명조끼

위반 시 과태료

1차 위반

90
만원

2차 위반

150
만원

3차 위반

300
만원



구명조끼 착용 관련 Q&A



1



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대상 선박은 어떻게 되나요?

원양어선, 내수면어업,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
모든 어선은 해당됩니다.

2



항내 접안 등 어업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인가요?

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.
다만 항구에 완전히 정박한 상태에서 착용하지 않는 것은
예외로 인정됩니다.

3



부상, 질병, 장애 등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 단속 대상인가요?

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
인정됩니다.

4



외국인 어선원도 같은 적용을 받나요?

외국인 어선원도 우리 어선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5



구명조끼 미착용시 단속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선원과, 구명조끼 착용을
지시하지 않은 선장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

6



팽창식 구명조끼의 부품교체는 어떻게 하나요?

관할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문의하시면
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□ **개요**

- 「수산업법」 일부개정*으로 불법·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,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관리 강화 제도 마련

* 법 개정·공포일('25.4.22), 시행일('26.4.23)



① **불법어구 즉시 철거제**

- 무허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의 신속한 철거를 위한 특례제도* 마련

* (내용) 행정관청이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(계고) 및 제2항(대집행영장 통지)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

** (절차) ① 불법어구 발견 → ② 철거 후 보관 공고(1회 추가 공고) → ③ 소유자·사용자 반환 시 비용징수 → ④ 공고 후 1개월 내 미반환 시 매각·폐기

② **어구관리기록제**

-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*에 대하여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 비치 및 어구 적재·설치·유실·폐기량 기록·관리·점검**

* 근해어업(자망, 통발, 안강망) 우선 적용

**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공무원 확인·점검 / 위반 시 과태료(백만원 이하)

③ **유실어구신고제**

-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*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신고

* (신고기준) 자망(1천미터 이상), 통발·장어통발(100개 이상), 안강망(1통 이상)

종 명	금지체장	금 지 기 간												비 고
꽃게	6.4cm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* 수산자원의 포획(금지기간)에 관한 고시(제14호, 제17호, 제64호)에 따라 금지체장 준수(사정명 참조)
대게	9cm	북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대게의 암컷 : 연중포획금지					6.21~8.20*							* 수산자원의 포획(금지기간)에 관한 고시(제14호, 제17호, 제64호)에 따라 금지체장 준수(사정명 참조)
대하	-					5.1~6.30								동경131도30분 이등수역은 6.1~10.31, 기타 구역별 금지기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
민꽃게	-	북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민꽃게의 암컷 : 연중포획금지												
붉은대게	-	붉은대게의 암컷 : 연중포획금지					7.10~8.25							강원도 연안자생어업은 6.1~7.10
가리비	-					3.1~6.30*								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, 주가의 해역에 한함으로 변경
기수재첩	각장 1.5cm													
마대 오분자기	각장 4cm (제주도산 한정)													
오분자기	각장 4cm (제주도산 한정)							7.1~8.31						제주특별자치도 한정
새조개	-							6.16~9.30						다만, 부산, 울산, 경남, 전남 (무안, 영광 제외), 제주는 6.1~9.30
소라	각고 5cm (제주도, 울릉도, 독도산은 7cm)							7.1~8.31						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, 참조
전복류	각장 7cm (제주도산은 10cm)									9.1~10.31				제주특별자치도는 10.1~12.31
키조개	각장 18cm (부산, 울산, 강원, 경북, 경남산 한정)							7.1~8.31						
코끼리조개	-						5.1~6.30							강원도 및 경상북도 한정
낙지	-						6.1~6.30							* 경남 6.16~7.31, 전남, 경기, 인천 6.21~7.20, 충남(거포로만, 근소면내측) 4.1~5.31
대문어	체중 600g													
살오징어	외투장 15cm						4.1~5.31							근해채낚기, 연안복합어업, 청정어업은 4.1~4.30
주꾸미	-							5.11~8.31						
해삼	-							7.1~7.31						
참문어	-						5.16~6.30							* 경남, 전남 5.24~7.8, 제주 8.1~9.15
넙미역	-									9.1~11.30				* 다만, 제주도산 5.1~11.30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초과하여 채취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포획
우뚝가시리	-						~3.31						11.1~	
돛	-						~1.31						10.1~	
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,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불법 포획·채취한 자, 불법 포획·채취한 수산자원이거나 그 제물을 소지·유통·가공·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근거법령
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, 제17조, 제64조 제1호, 제2호

신고포상금
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어선원 대상, 사법처분 최고 600만원, 행정처분 최고 400만원 지급
*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

해양수산부
동해어업관리단

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-5119
동해어업관리단 051-410-1030~32, 35

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속도

*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* 다만, 갈치, 고등어, 참조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(제26943호, 2016.2.3)에 따라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어류: 전장, 횡문장, 체만폭
오징어류: 외투장
패류: 각장
갑각류: 각고, 두루갈장, 두루갈장

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수제법 (각종) 마조미(각종) 소라(각종) 오징어(각종) 꽃게 (각종) 전복류(각종) 대게류 (각종) 도루묵 상오징어(부정) 황새치(부정) 갈치(부정) 참치(부정) 문치(부정) 참돔(부정) 농어(부정) 방어(부정) 민어 조파불락(부정) 참돔(부정) 갈치(부정) 참조기(부정) 참홍어(부정) 청어(부정) 갯장어(부정) 미거지(부정) 참홍어(부정) (부정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 명		금지	금 지 기 간												비 고	종 명		금지	금 지 기 간												비 고													
		제장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	제장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											
갈치		항문장 18cm	갈치 어획량 중 해당 제장의 갈치를 20%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 제외							7.1~7.31*	해당 구역·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%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 제외					* 북위(35.00)00초 어복(以)해역에 한정(근해채취가, 연안복합어업 제외)	방어		30cm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성돔		25cm					5.1~5.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갯장어		40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등어		21cm	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제장의 고등어를 20%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 제외							(2026년) 5.1~5.31*	해당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%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 제외					*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(미흡, 소형선정어업 및 제추특별자치도 장자정어업의 경우 4.1~4.30)	삼치		-					5.1~5.31																				
기름가자미		20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넙치(광어)		35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농어		30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구		35cm	1.16~2.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루묵		11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돌돔		24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말뚝치		18cm					5.1~7.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태		-	연중포획금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문치가자미		20cm	~1.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거지		40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민어		33c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